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해야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놓칠수도
시민들 적극적 관심·협조 절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차의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에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소방 관련 시설 5m 내 주정차 전부 금지’ 법안 위반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으나 광주지역 내 소화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광주 동구 동명동과 웨딩의 거리 일대의 경우 평일 오전부터 거리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그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절대 금지 적색 노면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2항에 따라 다른 곳에 비해 2배 높은 과태료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소화전이 가려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재시 초기 진압이 어려워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준수 및 주민신고제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운전자 김모씨(23)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문구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앞으로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꾸준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



광주 동구 동명동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불법주정차돼 있다.

·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접수해 신고하면 된다.



송수민

대학생 시민기자
(전남대 중여중문학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도심속 노후된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의 한숨

요철·임시 보수로 낮낮이 차이 위험
안전장비 착용해도 부상으로 이어져

“여러 색으로 덧칠된 것처럼 보여 자전거도로인 줄도 잘 모르겠어요.”

도심 속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본 한 시민의 반응이다. 색이 바래고 균열이 간 자전거도로를 임시로 보수해 자전거 도로임을 알리는 표시는 지워져 잘 보이지도 않는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도심 속 자전거도로는 여전히 노후로 인한 요철과 낮낮이 차이 등으로 자전거 이용객에게 위험이 된다.

도심 속의 자전거도로는 여기저기 패어있는 곳이 많았고 임시로 보수한 곳은 낮낮이 차이로 위험한 곳도 많았다. 또한 지하철, 주차장 입구 등으로

인해 길이 끊기곤 해 500m를 한 번에 가기가 어려웠다.

노후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객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요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이용하더라도 넘어질 경우 골절과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밤이 되면 위험 요소는 더 늘어난다. 가로등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를 식별하기 힘들고 아파트 단지 인근의 경우 운동을 하기 위해 나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타랑개’, ‘카카로 바이크’ 등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보다 늘어났지만 자전거도로의 개편은 그 속도에 따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풍암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2)는 “자전거도로 구석구석이 패어있어 엉덩이를 안 들고 타면 충격이 바로 와서 힘들다”며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고 토로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모씨(33)는 “여전히 패어있는 도로가 많아 위험하다”며 “전번 쪽 자전거도로는 새로 정비했던데 도심 속 자전거도로는 여전히 노후된 상태라 아쉽다”고 말했다.

금남로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이모씨(27)도 “겸용도로로 통행하던 자전거가 휘청해 부딪힐 뻔한 경험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최지혜

대학생 시민기자
(조선대 무역학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사각지대 전동킥보드가 달린다

보호장구 미착용 등 안전문제 빈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용자들의 아찔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공유업체가 생겼고,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플을 통해 주차돼있는 장소를 확인해 찾아가 QR코드를 찍으면 이용이 시작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편한 곳에 주차하면 되는 방식이다. 지정업체에 찾아가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사용, 음주주행 등의 안전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는 897건에 달하며 2018년 대비 4배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돼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 이용층인 20대 초반은 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단속한다면 매출과 직결돼 본사에서 허술한 면허인증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사용, 음주주행시 범칙금은 각 2만원, 4만원, 10만원이다.

관련 사고들이 급증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커졌다. 전동킥보드와 야생동물 고라니의 합성으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용자는 ‘키크라



길거리에 방치돼있는 전동킥보드.

니’,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이용자는 악인을 뜻하는 ‘키크보드 빌런’이라고 부르는 등 신조어도 생겨났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송모씨(29)는 “버스 타기 애매한 거리를 갈 때 자주 이용한다”며 “헬멧을 써야 하는 건 알지만 들고 다니기 번거롭고 단속도 잘 안 하다 보니 그냥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직장인 이모씨(30)는 “밤 11시에 3차선 도로에서 2명이 킥보드를 타고 헬멧도 안 쓴 채 이리저리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 아찔하더라”며 “요즘 위험하게 타는 이용자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빈

대학생 시민기자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장애’ 모른 척하기보단 먼저 알고 배려하자

“다리를 다치거나 휠체어를 타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해본 사람은 불편함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갖게 되면 평소엔 전혀 문제가 없던 엘리베이터의 유무가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동시에 가야만 하는 곳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반 건물을 출입할 때도 계단이나 오르막길의 경사가 심하면 쉽게 올라갈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기도 하다. 또 힘들게 오르막길을 올라 불임을 본다 한들 경사로를 내려올 때 너무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5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이 느끼는 일상에서의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리를 다쳐 이동이 불편해지면서 남들과 똑같이 학교에 가고, 불임을 보는 것, 건물 입구에 가는 과정조차 너무 힘들어졌다. 심지어 저상버스에서는 장애인 자리 양보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이들은 여디를 가나 너무 힘든 대우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람들의 낮은 시선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딘가 불편할 뿐인데 차별을 당해야만 하는 게 옳은 사회일 리 없다.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는 많이 개선되는 중이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다. 법적으로도 더 강화돼야 할 점이 많다.

우리가 겪지 않으면 모르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 그저 조금이라도 자신이 겪지 않을 일이라고 모른 척하기보단 스스로 먼저 알고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자빈

대학생 시민기자
(동강대 작업치료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M 전남매일 국민안전 캠페인

#코로나19 #국민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일상을 꿈꿉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 0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 0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0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0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0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0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0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 0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0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